

경인옛길확장방향변경요구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성명 : 전용하

주소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33번지

나. 소개의원 : 임해규 의원

다. 접수일자 : 1999. 11. 24

라. 회부일자 : 1999. 11. 24

마.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0차 건설교통위원회(99. 12. 16) 상정 의결

2. 청원요지

- 소사역세권상세계획 중 경인옛길 확장계획을 현재의 계획(안)인 북쪽으로 확장하는 것보다 소사구 청원인 남쪽으로 도로를 확장할 경우 토지 매입 및 지장물의 보상비로 예산을 약 20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도로의 확장계획을 방향을 변경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3. 취지설명요지

(취지설명 : 임해규 의원)

- 소사역세권상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인옛길 확장계획은 방향을 반대편인 남쪽으로 할 경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 한편 움부즈만의 현재와 향후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소사3거리에서 현재 확장계획 시발점인 사거리에 이르는 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제일 많아 혼잡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만큼 사업 우선순위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 특히 소사삼거리에서 가톨릭대 입구 삼거리까지의 경인옛길 전체에 대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봄.
- 따라서 청원인이 요구하는 경인옛길 확장 방향변경 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경인옛길 확장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청원인이 요구한 대로 방향을 남쪽으로 변경할 경우 약 2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가?	○ 방향을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 현재의 계획선상보다 지장물이 적어 약 6억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음.

- 방향을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 도로의 굴곡현상으로 운전자에게 시야장애로 위험성은 내포되어 있지 않은가?
- 방향을 북쪽으로 시행할 경우 예산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데 굳이 남쪽으로 계획한 이유는?

- 현재 계획선은 직선으로 되어 있으나 변경시 굴곡현상이 있음. 직선보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도로의 형태가 직선으로 되고 현재의 계획방향 쪽으로 농·수산물센터와 삼양중기의 부지가 있고 향후 법박로의 차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방향으로 계획하였음.

5. 심사결과

-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 경인옛길 확장방향 변경요구에 대한 청원의견서 1부

의 건 서

의 번	안 호	제252호
--------	--------	-------

부천시의회

건 명	경인옛길 확장 방향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		
청 원 인	주 소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33번지	
	성 명	전 용 하	
소개의원	임 해 규 의원		
소개년월일	99. 12. 16	처리년월일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99. 12. 24)

- 동사항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33번지 전용하 외 85명이 경인옛길 확장 구역을 현재 추진구역의 반대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소사삼거리에서 성심고가교 입구 삼거리까지의 경인옛길 전체구간에 대한 확장계획을 재수립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사업으로 추진토록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 시에서는 청원내용대로 도로의 확장 구역을 반대편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 차량의 주행 차량이 굴곡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가 형성되게 될 것이므로 기설 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선형변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나,
- 동청원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청원인이 실시한 감정평가에 의하면 방향을 변경하여 도로를 확장하여도 굴곡으로 인한 시야 장애로는 차량통행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 또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에서도 변경 시행할 경우 약 20억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원내용대로 도로의 방향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향후 경인옛길 전체에 대하여 확장계획을 수립,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도로의 확장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1999년 12월 24일

부천시의회 의장

수 신 : 부천시의회 의장

1999. 11. 24

제 목 : 경인옛길 확장 방향 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청원서 1부. 끝

청원자(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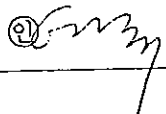
주 소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33

(전화 : 02-878-4782)

성 명 : 전 용 하 (인)

소개의원 : 임 혜 규 (인)

청원 소개 의견서

청원건명	경인옛길 확장 방향 변경 요구			
청원인	주소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33		
	성명	전용하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임해규 			
소개년월일	1999. 11. 24			

소개 의견

민원인들은 경인옛길 확장방향을 반대편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예산과 다지출입니다.

읍부즈만의 견해에 따르 사거리에서 소사삼거리에 이르는 도로의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의 견해로는 소사삼거리에서 가톨릭대 입구 삼거리까지의 경인옛길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확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바 '경인옛길 확장방향 변경 요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청 원 서

수 신 : 부천시의회장

참 조 : 건설교통위원회 임해규 의원

민원인 : 전용하, 신인숙 외 85인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33번지, 전용하 02-878-4782)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33-1번지, 신인숙 011-234-1591)

「소사역세권상세계획」 중 「경인옛길(소사구청-소사삼거리 구간)확장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을 올립니다.

□ 청원요지

도로확장구역을 현재 계획(안)의 반대편인 소사구청편(진우공업-화성용갈비)으로 하시면 최대 20여 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청원이유

1) 시측에서 주장하는 도로굴곡 문제에 대해

-부천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하면 도로 각도를 완만하게 유도 가능, 시야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차량통행의 안전문제는 없음(도면 1 참조)

2) 시계획에 나타난 소사삼거리 예산낭비 해소

-시계획에 의하면 소사삼거리 여우고개방향에 상당한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되고 이로 인해 건물 을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상당한 액수의 건물매입비가 소요됨(도면 2 참조)

3) 부천시, 계획 변경하면 약 20여 억원의 예산 절감

-우리 민원인은 부천시의 경인옛길도로확장계획을 입수 검토한 바 현행 계획이 예산낭비를 가져 온다고 판단, 민원인 개인사재 1,100만원을 모아 도로확장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도로확장을 부천시가 현행 계획대로 하면 약 20여 억원의 예산을 낭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사역세권상세계획과 맞물려 시행되는 경인옛길 확장공사가 아무쪼록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현명하게 처리되길 간곡하게 바랍니다.

1999년 11월 일